



중국, 비즈니스 모델 특허 처음 인정

[자료원: 니케이신문 3. 25]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시티뱅크가 출원한 전자경영 시스템 등 2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인정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성립한 것은 처음.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 등은 종래의 기술 특허나 상표권뿐만 아니고, 새로운 지적 재산권 대책이 필요하게 될 듯 하다.

일본무역진흥회 북경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서 인정된 것은 전자경영 시스템 외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관리 방법과 그 조작 방법」의 2건. 모두 시티뱅크가 1990년대에 신청한 것이다. 동사는 그 밖에 17건의 동 특허 출원이 끝난 상태인데, 향후 권리 부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이나 기술개발이 늦은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영국, 지재권 소송의 간소화

[자료원: Mondaq 3. 17]

2003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허, 의장, 상표 등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간소화 절차(New Streamlined Procedure)”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간소화절차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실증거, 전문가 증거의 서면제출
- 서류 공개요건 불요
- 실험 비부과

- 상호심문(cross examination)은 제한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소송의 총 계속시간(total duration of trial)의 고정
→ 보통의 경우 하루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 절차가 개시된 연도 내의 소송 진행

이러한 간소화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한 고등법원 특허부(the High Court Patents Court)와 지방특허법원(Patents County Court)에 모두 적용될 것이며, 특별히 법원은 간소화 절차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비례성(proportionality)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 정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간소화 절차는 주로 지방특허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국의 법원이 특허소송에 있어서 보다 매력적인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특허성은 특허허여의 필수요건 아니다.

[자료원: mondaq 3. 21]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싱가포르에서의 특허요건은 다른 나라에의 특허요건과 동일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특허요건은 특허허여를 위한 선결요건은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해진 형식들이 만족되지만 하면 특허는 발행될 것이다. 이것은 발명이 완전한 출원절차만 거친다면, 특허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궁극

적으로 특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싱가포르 특허제도의 분명한 특징이다.

싱가포르 특허제도는 특허가 허여되기가 쉽다. 싱가포르에서 특허법이 1995년 시행되었을 때, 특허유효성을 결정하는 부담을 분쟁절차로 넘기는 것이 싱가포르에서의 특허소송 및 취소의 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거의 8년이 지났으나 특허유효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원의 결정은 별로 없었다.

홈페이지 담보로 1000만엔 융자

[자료원: 마이니찌신문 3. 17]

일본 정책 투자 은행은 3월 14일 IT 관련 벤처 회사인 펜슬(후쿠오카시)이 소유·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담보로 신규 사업 개발 자금 1000만 엔을 융자했다. 동 은행은 95년도부터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199건, 총액 약 115억 엔의 융자 실적이 있지만, 홈 페이지를 담보로 한 것은 처음이다. 펜슬사는 95년 설립되었는데 Net상에서 수십 개 종류의 포털 사이트를 기획, 설립, 운영을 하고 있다. 담보로 한 것은 머리카락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머리카락 도우미!」의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 소유권 등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한 사업의 향후 5년간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 융자했다. 이번 융자 대상이 된 신사업은 기업의 홈 페이지의 광고 효과를 즉시 분석하는 시스템의 개발(약 2400만엔), 올여름부터 판매해, 초년도 매상고는 약 2000만 엔을 전망하고 있다.

JPO, 2002년 지적재산활동 조사 발표

[자료원: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3. 27]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 등의 지적 재산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적 재산 활동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얻은 목적으로 2002년 10월 한달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제도의 이용상황

- 일본 국내출원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출원건수는 금후 2004년까지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상표는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외국출원은 특허, 의장의 아시아에서의 출원건수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출원(PCT)은 일본국내의 특허출원보다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산권의 소유 건수에 대한 자사 실시 건수의 비율은 특허권이 약 30%이고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은 40%-50%가 되고 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특허권 자사 실시 건수의 비율은 40~50%가 되고 있고,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산권 수지상황

-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라이선스 수지를 비교하면, 수입은 4,114억엔, 지출은 3,941억엔으로 다소 흑자인데 그룹 내 기업과의 거래를 제외한다면 수입은 2,144억엔, 지출은 3,339억엔으로 적자가 되고 있다.
- 라이선스 수지 내역을 산업재산권별로 보면, 특허권의 수입은 3,566억엔, 지출은 3,215억엔으로 흑자, 실용신안권의 수입은 11억엔, 지출은 1억엔으로 흑자, 의장권의 수입은 10억엔, 지출은 1억엔으로 흑자, 상



표권의 수입은 527억엔, 지출은 724억엔으로 적자가 되어 있다.

- 라이선스 지출을 보면, 對미국 수입은 2,091억엔, 지출은 2,740억엔으로 적자, 對유럽은 수입 1,031억엔, 지출은 1,125억엔으로 다소 적자, 對아시아는 수입 927억엔, 지출 50억엔으로 흑자가 되고 있다.
- 라이선스 수입, 지출을 업종별로 보면 라이선스 수입이 큰 업종은, 전기기계기구공업이 1,032억엔, 의약품 876억엔, 식품 429억엔이 되고 있다. 라이선스 지출이 큰 업종은 전기기계기구공업이 1,722억엔, 자동차 328억엔, 의약품 300억엔이 되고 있다.
- 라이선스 수지를 업종별로 보면, 흑자가 큰 업종은 의약품이 577억엔, 식품 408억엔이고, 적자가 큰 업종은 전기기계기구공업이 690억엔, 그 외 서비스업이 320억엔으로 적자다.

지적재산활동의 체제·비용

- 기업 등의 지적재산담당자의 총 숫자는 약 10만명이고, 그 약 1/3이 출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계하고 있다. 나머지 2/3는 조사와 관련된 업무(선행기술조사 등), 관리와 관련된 업무(총괄관리, 기획), 분쟁과 관련된 업무(소송, 라이선스)가 많다.
- 지적재산관련 총비용은 약 3.5조 엔이고, 80%는 출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출원 관련 비용의 내역으로서, 대개 특허 출원비용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지만, 식품공업이나 소매업, 부동산업, 음식점, 숙박업에서는 출원 관련 비용 가운데 상표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적재산권침해 상황

- 일본국내 권리에 기해 경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특허권이다. 이 경우에 경고건수는 소송건수의 약 10배가 되고 있다.
-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이 미국기업으로부터이고,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소송건수 전체의 약 70%이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권에 기한 것이 가장 많고 전체의 약 90%이다.
- 한편,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을 소송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은 아시아기업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건수의 50%를 넘고 있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권에 기한 것이 많고 전체의 약 70%이다.
- 특허권의 소송건수는 업종별로 보면, 특허에 관해서 소송이 많은 것은 전기기계기구공업이고, 소송하는 경우가 26건, 소송당하는 경우가 37건이 되고 있다. 소송하는 경우에 다음으로 많은 것은 기계공업 19건, 정밀기계공업 17건이고, 소송당하는 경우에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자동차공업과 정밀기계공업 25건, 기계공업 21건이 되고 있다.
- 상표권 소송건수는 식품공업이 소송하는 경우 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 외 업종 18건, 도매업 12건이다. 소송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것은 도매업 10건, 의약품 7건이다.

다국어도메인네임 곧 실용화 될 가능성

[자료원: Internet.com 3. 28]

지금까지 도메인네임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뿐

이었지만, 곧 바뀔 것 같다. 알파벳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중국어 등)를 도메인네임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격의 승인을 위해 ICANN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ICANN의 이사회 회장 Vinton G. Cerf는 이 번주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 회의에서 신규격이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가 비영어 문자를 컴퓨터를 이용해 순조롭고 용이하게 변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문제는 기존의 도메인네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 ASCII 문자를 의미적/표시적으로 같은 ASCII 캐릭터 라인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유저가 언제부터 영어 이외의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될까는, 기술자가 그러한 언어의 변환 방식을 언제 완성 시킬까에 의하는 것이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라고 말해지고 있다.

ICANN은 식규격에 관한 배경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덧붙여 Cerf는 신규격이 승인되었다고 해도 도메인네임의 뒤에 붙는 「.com」이나 「.org」 등은 현재 영어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올해내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특허탄생 전망

[자료원: 닛케이신문 4. 2]

피부의 재생 의료나 유전자 치료등 첨단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 일본 국내 처음의 특허가 올해 내에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이 심사 기준을 작성해서 여름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히타치제작소나 올림푸스광학공업등이 출원하기로 결정했다. 성장 분야라고 기대되고 있는 첨단

의료기술로 이미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대항해서 일본 기업의 기술개발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특허권은 인정되지만, 진단이나 치료, 수술등 일련의 의료행위는 산업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최근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의사 이외의 제3자가 배양하는 가공기술이나 유전자 치료등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대만, 미국특허 취득건수에 있어서 상위랭킹

[자료원: Reuter 4. 1]

대만 경제성은 대만이 2002년도 미국특허취득에 있어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특허취득을 한 국가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만은 1990년 이후 평균 18.7%의 특허취득 증가율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평균 24.5%를 기록한 한국에 이어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USPTO 발표 미국내 특허취득수 10위권 국가명단 (미국제외)

순위	국 가	취득특허수	순위	국 가	취득특허수
1	일 본	34,859	6	대한민국	3,786
2	독 일	11,277	7	캐나다	3,431
3	대 만	5,431	8	이탈리아	1,750
4	프랑스	4,035	9	스웨덴	1,675
5	영 국	3,838	10	네덜란드	1,391

대만 경제성 산업기술국장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특허는 반도체기술에 집중되어있으나 향후에는 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으로부터 증가가 기대된다고 예상한다.



대만 최대 매출의 사기업체인 주)혼하이(Hon Hai)정밀공업이 507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세계 최대의 contract chip 메이커인 주)대만반도체는 447건의 미국특허를 취득했고 경쟁사인 대만 Microelectronic사는 275건의 미국특허를 취득했다. 대만정부는 공공과 민간 자금 약 273억 대만달러(7억8400만US달러)를 투자하여 생명공학공단을 조성하여 대만을 역내 생명공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02년부터 5년동안 매년 약 100억 대만달러를 투자하여 대만의 생명공학기술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이미 성공적인 각종 컴퓨터와 통신 전자 제품의 세계적 생산 중심지로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공업공단을 이러한 생명공학과 기타 전략산업의 공단의 모델로 삼으려 하고 있다.

USTR, 2003년 NTE 보고서 발표

[자료원: USTR 4.1]

2003년 4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03년 외국 무역장벽에 관한 국가별 무역보고서(200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NTE 보고서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미국인에 의한 외국직접투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외국 장벽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러한 목록을 바탕으로 USTR은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 NTE보고서는 한국관련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적재

산권 관련분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정부가 IPR 법률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인하여 한국은 2002년 스페셜 301조의 “우선 관찰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한미 양 정부는 양자간 정기 무역 협의의 일부로 2002년 동안 지적권 문제에 관하여 여러번의 협의를 가졌고, 미국은 2002년 동안 한국이 다짐한 집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내의 새로운 특별단속반에 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노력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할 것, 그리고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전송권을 설립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집행 노력의 투명성, 일시적인 저장의 보호, 기술적보호조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그리고 당사 자체 구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소급적 보호의 부재, 소비재의 지속적인 위조 행위, 의약품 특허, 의약품 시장 승인에 대하여 한국 보건 당국과 IPR 관련 당국간의 조정 부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 2002년에는 한국의 영화 및 비디오 등급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허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 영화들이 부당하게 한국에서 등록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2003년 상반기에 국회에 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과 함께 잠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는 잠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일본, 특허출원신청 24시간 가능하게 할 계획

[자료원: 닛케이신문 2003. 4. 1]

일본정부는 3월 31일, 中央省廳의 전자정부화로 향한 기본방침을 마무리 하였다. 특허신청등은 인터넷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출시키고 있던 주민등록증등의 첨부서류도 전자화한다. 각 성청이 6월말까지로 개별 관찰분야의 계획을 정리하고, 새롭게 책정한 「e-Japan 전략」에 반영시킨다.

「전자 정부 구축 계획」의 기본방침에는, 2004년도까지 각 성청 공통의 인사·급여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보기술(IT)화에 대응해서 업무를 개혁하는 것과 독립 행정법인이나 지방자치체와 연대해서 우체국이나 학교등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일괄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2005년도 말까지 진행할 것도 포함시켰다.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각 성청에 1인씩 「각 府省정보화통괄 책임자(C I O)보좌관」을 신설하고, 민간의 전문가를 채용한다. 전자 정부의 이용에 있어서는 PC뿐만 아니라 보급율이 높은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검토 할 계획이다.

「후세인 정권 후」의 휴대전화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이권을 주장하는 움직임

[자료원: .horwired news 4. 1]

「후세인 정권 후」의 이라크의 휴대전화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의 CDMA 방식 채용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자금으로 유럽계의 GSM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전쟁

후 부흥 계획이 밝혀졌는데 이것에 반발하는 의원이 CDMA 채용의 법안(H.R. 1441)을 제출하여 미국 방식의 채용과 미기업의 우선적인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법안은 Darrell Issa 하원 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이 이번에 제출하고 동시에 럽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동의원은 「유럽 기술에 근거하는(GSM)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미국의 특허 보유자가 아닌 유럽이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 법안에서는 이라크의 전쟁 후 재건에 관한 모든 계약에서 미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납세자가 이라크 국민에게 기술과 국가간산업 준비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부담한다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에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라크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알카텔사가 일부 지역의 GSM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대전화기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인근 나라에서는 GSM 방식이 주류인데 GSM 방식이 채용되면, 알카텔사나 독일 지멘스사가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Darrell Issa의원의 고향인 샌디에고에는 CDMA 방식의 개발원인 미 컬컴사 본사가 있다.

최근 핀란드 IP 발전 상황

[자료원: Mondaq 4. 8]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핀란드의 상공부장관은 최근에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지침을 위한 EU의 제안서」에 대한 국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특



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특허등록원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 이하 특허원)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된 지침이 현행 특허원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대상물이 아니며, 현행기술에 대한 기술적 기여를 하는 발명의 오직 일부분만 특허대상이 된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안서는 2002. 2. 20 유럽 위원회 (EC)에 의해 제출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발명 분야에서의 특허 보호에 관하여 유럽의 현행 법적 상황이 모호하고 법적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EPC와 국내 특허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대상물로부터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특허청(EPO)와 몇몇 국내 특허청은 관행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핵심분야에서는 종종 그러하다. EPO와 몇몇 국내 특허청은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권리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특허청은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제안된 지침의 목적은 EU 회원국들간의 국내 특허법을 통일하는 데 있다. 제안서는 청구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매개체 (on their own or on a carrier)에 대한 특허 권리청구범위를 허용하는 EPO의 관행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지침은 기술적 기여에 대한 요건을 성문화하고 있다. 즉,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발명은 반드시 “기술적 성격(technic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기술분야의 현존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기여해야만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구동되거나 컴퓨터 기억장치에 짜 넣어질 때 기

술적 성격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EPO의 현행 관행과는 반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혹은 매개체 내에서는 그러한 “기술적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

기술적 기여에 대한 요건은 또한 대부분의 영업방법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방법은 기술분야의 현존기술에 대한 진보성 기여를 한다면 여전히 특허가 가능하다.

핀란드에서, 특허원의 현행 관행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혹은 그 매개체에 대한 제품 특허권리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허원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프로그램된 컴퓨터 혹은 다른 장치의 형태에서의 제품이나 혹은 그러한 장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으로 권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제안된 지침에 대한 특허원의 해석은 현재의 형태로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원의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된 산업 디자인 보호는 핀란드는 의장보호법 (Design Protection Act)을 개정함으로써 의장의 법적보호에 관한 EU 지침을 이행시키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2002. 8. 1 발효되었다. 의장권은 창조적이고, 새롭고 필수적으로 현존 디자인과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적 요소, 심미적 디자인 그리고 장식을 포함하는 산업 의장으로 존속한다. 특허원에서의 의장 등록은 의장 보호의 선행조건이다.

개정된 법률은 산업 의장에 부여되는 보호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첫째, 보호기간이 이전의 15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연장되었다. 둘째, 의장 보호는 이제 제품의 일부(예를 들면, 병의 목 부분)도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이전의 법률은 제품

외형의 전체에만 보호를 부여하였다. 혼합 제품의 부품 요소의 디자인은 그러한 부품이 혼합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동안 가시적으로 남아 있고, 신규성과 개별 성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은 보호된다.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묘사되는 디자인, 그리고 제품 혹은 부품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디자인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2002. 3. 6에 각 EU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 된 EU 지침이 공동체 의장에 관한 등록의 각료 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된 이후, 핀란드는 “등록 공동체의장”과 “미등록 공동체의장”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 등록 공동체 의장은 내부시장 통일화를 위한 EU 사무국(OHIM)에 의장 등록으로 획득된다. 미등록 공동체 의장은 설립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이 유전자 복제 사업에 나서다

[자료원: Reuter 4, 9]

장기이식의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은 4월 9일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데 참가했던 영국회사의 미국 자회사를 인수하는 투자그룹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대학에

근거를 두고 의학과 과학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사적 자금으로부터 그들의 연구자금을 지원받는 최근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우의 연구분야는 동물대 인간의 이종간 장기이식기술의 개발이다.

이 투자그룹은 버지니아주 Blacksburg에 있는 PPL Therapeutics Inc.(이하 PPL: 영국 PPL Therapeutics Plc.의 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Regenecor Holdings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의 PPL은 유전자 조작된 돼지를 기르고 있고 간세포(stem cell)기술과 다클론성 항체, 면역체계 단백질에 근거한 실험실 조작 단계의 약품과 vaccine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 Blacksburg의 시설을 간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소위 마스터 세포의 연구기지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피츠버그대학의 Chihiro Kohike박사가 인간과 동물간의 장기 이식을 불가능하게 하던 유전자를 밝혀 냈으며, 그 이후 PPL은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돼지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이번 인수결정에 따라서 PPL은 재생의학 부분 자산과 그와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출원과 관련된 권리를 Regenecor측에 양도했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제공

